



장례준비를 위한 매뉴얼



 **해피엔딩**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29 해피엔딩빌딩 / 대표전화 1600-4401 / www.happy-ending.co.kr

1. 장례식을 위한 주요 결정사항

Advice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특성은 고인의 임종 전에 장례준비를 하는 것을 고인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으로 생전에 아무 준비가 없다가 임종하면 그 때서야 장례식장을 결정하고, 화장 할지 매장할지 선택하고, 안치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족들은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경황이 없게 되고, 장례절차 및 방법, 장례비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달라 가족간에 갈등과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임종 전에 장례식 장소, 장례절차, 장례비용, 안치장소 등 장례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계획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인이 생존에 가족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장례 절차 및 방법을 미리 정해 두거나, 또는 본인이 의사를 가족에게 남겨둌으로써 유족들은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장례식 장소는?

- ☐ 장례식장에서 한다.
- ☐ 자택에서 한다.
- ☐ (이 외)

장례장소

장례식장 :

주 소 :

전화번호 :

2) 장례진행은?

- ☐ 가입한 보험회사를 이용한다. (가입내용 기재)
- ☐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한다. (가입내용 기재)
- ☐ 가족 중 ()의 회사(단체)에서 지원하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한다.
- ☐ 가족이 알아서 직접 진행한다.

가입내용

회 사 명 :

가입일자 :

가입금액 :

증서보관장소 :

3) 장례식의 상주는?

☐ 상주는 ()가 한다.

4) 장례방법은?

- ☐ 불교식으로 한다.
☐ 기독교식으로 한다.
☐ 천주교식으로 한다.
☐ 전통식으로 한다.
☐ (이 외)

부탁할 곳

단 체 :

이 름 :

연 락 처 :

5) 아호, 법명, 세례명은?

- ☐ 아호(雅號)가 있다. (한문 : 한글 :)
☐ 법명(法名)이 있다. (한문 : 한글 :)
☐ 세례명(Christian name)이 있다. (세례명 :)
☐ 없다.

6) 수의는?

- ☐ 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다. (보관장소 기재)
☐ 평상시 입던 옷으로 입힌다. (보관장소 기재)
☐ 가입한 보험회사,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입힌다.
☐ 장례식장에서 구입한다.

보관장소

7) 부의금은?

- ☐ 받지 않는다.
☐ 받아서 장례비용으로 충당한다.
☐ 받아서 기부단체에 기부한다. (기부단체 :)

8) 장묘방법은?

- ☐ 화장한다.
☐ 매장한다.

9) 화장할 경우 안치장소는?

- ☐ 산골로 한다. (산골장소 : _____)
☐ 수목장으로 한치한다. (수목장소 : _____)
☐ 봉안당 (☐ 개인단, ☐ 부부단)에 안치한다.
☐ 가족봉안묘에 안치한다.

안치장소

업 체 :

주 소 :

연 락 처 :

기타(증서보관장소) :

10) 매장할 경우 안치장소?

- ☐ 화장해서 매장한다.
☐ 선산에 (☐ 개인묘, ☐ 합장묘)로 안치한다.
☐ 공원묘지에 (☐ 개인묘, ☐ 합장묘)로 안치한다.

안치장소

업 체 :

주 소 :

연 락 처 :

기타(증서보관장소) :

11) 비석, 상석 등 석물과 묘비명은?

- ☐ 석물(☐ 비석, ☐ 상석, ☐ 기타석물)을 한다. (묘비명 기재)
☐ 안한다.

안치장소

업 체 :

연 락 처 :

묘 비 명 :

2. 사전 준비사항

○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

- 1) 평소 지병이 있으면 병원 전화번호, 담당의사, 병명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 영정사진 또는 영정사진으로 제작할 증명사진, 스냅사진을 준비해 둡니다.
- 3) 임종시 갈아 입혀드릴 깨끗한 옷과 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해 둡니다.
- 4)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여 준비해 둡니다.
- 5) 병원비 정산을 위한 고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준비해 둡니다.
- 6) 화장, 납골, 매장 안치시 필요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둡니다.
- 7) 본인의 임종과 관련하여 남기신 유언서, 장기기증서, 존엄사 선언서 등을 준비해 둡니다.
- 8) 유언을 남기실 것을 대비하여 녹음장치와 필기구를 준비해 둡니다.

○ 상주를 미리 정해 둡니다.

상주는 장례식의 주관자이면서 유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장례예식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과거 전통상례에 따르면 상주는 고인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되며,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 근친자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모 사망시 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카 또는 사위가 상주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딸 만 있는 가정이 많고, 또한 2008년 호주제 폐지 등 남녀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 종교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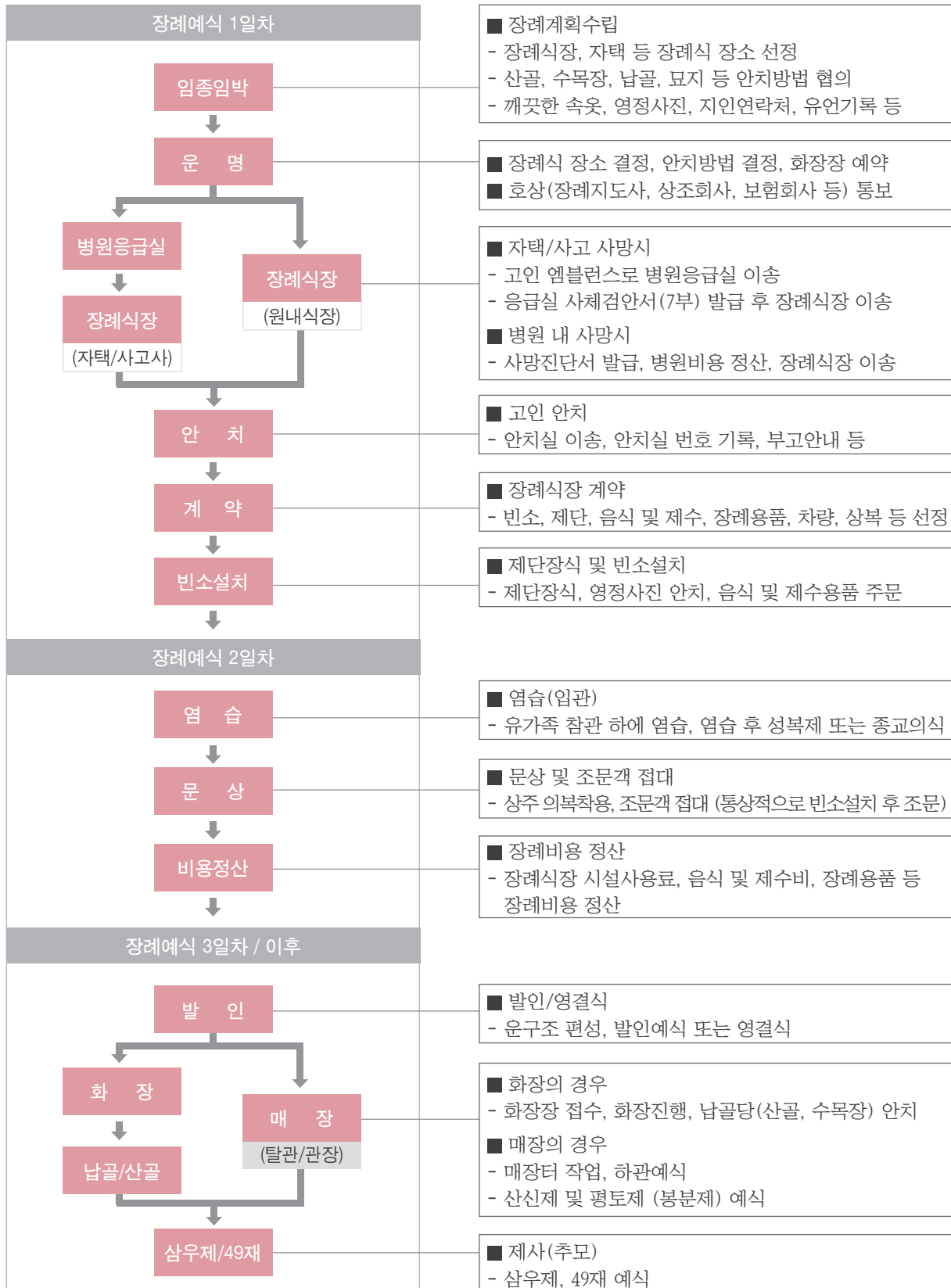
장례식은 고인의 종교 또는 가족의 종교에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는 부모간, 자녀간에 종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간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식은 우선적으로 고인의 신앙이나 생전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고인이 생존에 분명한 의사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 안치방법, 안치장소를 미리 정해 둡니다.

최근 장례식 장소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유족과 조문객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단 장례식장은 동일한 시설규모라 할 지라도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은 최대 2배~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것이 장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등 안치장소는 통상적으로 가격, 교통편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분양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필증” “설치허가서”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편, 휴게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중요함으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표준장례절차



4. 일자별 장례예법

첫 째 날

○ 임 종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운명이라 하고, 가족들이 운명하는 모습을 지키면서 모시는 것을 임종이라 합니다. 운명이 다가오면 가까운 가족들을 모이게 하여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또는 유언을 기록하거나 녹음 하기도 하며,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별로 임종 의식을 진행 하기도 합니다.

임종장소가 병원인 경우 사망진단서(7부)를 발급하고 자택 또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가 사망 원인을 검안한 후 사체검안서(7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자택 등에서 자연사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인후증명서로 사망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통장 포함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단, 사망원인이 “외인사, 기타 불상” 의 경우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종 후에는 장례식장 선정, 안치방법 결정, 화장장을 예약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또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다른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에는 시간관계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편, 빈소규모, 장례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 치

사망이 확인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절차로 장례지도사 또는 유족들은 안치실의 호실과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염습 또는 발인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시신상태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수시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추세로 교통사고 등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수시를 하고 있습니다.

○ 계 약

시신을 안치한 후 장례식장의 담당자와 장례일정, 장례 방법, 빈소규모, 장례용품, 제수음식, 발인일정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빈소와 접객실은 문상객 수를 미리 예상하여 적당한 크기를 선정하고, 종교 및 장례방법에 따라 장례용품, 제단장식, 제수음식을 선정합니다.

장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장례식장을 선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약 하느냐에 따라 장례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므로 장례문화에 대해 잘 아는 가족 또는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빈 소

빈소는 영좌(靈座)라 하여 영위(靈位)를 모시는 자리로 사자를 대신하여 제상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에는 적당한 화환장식을 하고 영정을 안치한 후 촛불을 밝히고 직계가족 순으로 참배합니다.

제수음식은 제상에 올리는 음식으로 기본적으로 전을 올리고 성복 후부터 석식과 상식을 올리나 기독교 등 특정 종교의 경우 음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통장례는 염습이 끝나기 전에 상복을 입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전통 상복보다는 양복을 입는 경향이고 또한 빈소 설치 후 문상객을 받기 위하여 염습 전에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 부 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친지, 친척, 지인, 단체 등에 운명을 알리는 절차로 부고에는 고인명, 상주명, 장례식장명, 장례기간, 장지, 발인일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고는 전통장례는 호상(護喪)명으로 하였으나 현대 장례는 상주명으로 하고, 신문부고를 원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대행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부고안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문 상

전통장례는 염습을 마친 후에 문상객을 받았으나 현대 장례는 대부분 3일장으로 장례기간이 짧기 때문에 염습과 관계없이 빈소와 영정이 설치되면 상복을 입고 문상을 받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통장례는 문상객이 오면 상주들이 일어나 곡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며, 상주는 떠들거나 말을 많이 해서는 안되고 문상객에게는 간단한 인사말만 해야 합니다.

둘 째 날

○ 염 습

염습은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으로 구분하며, 습은 시신을 깨끗이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말하고, 소렴은 수의를 입힌 시신을 염포로 싸서 묶는 절차를 말하며, 대렴은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 절차를 말합니다.

전통장례에서는 임종한 날에 습을 하고, 둘째 날에 소렴을 하고, 셋째 날에 대렴을 하였으나 현대장례는 통상 둘째 날 한꺼번에 하며, 염습은 정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장례지도사가 합니다.

염습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유족들이 모두 참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정을 잡아야 하며, 염습시 종교의식을 원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성 복

성복이란 상주와 친족들이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현대장례는 염습이 끝난 후에 영좌에 조전과 상식을 올리고 처음 지내는 제사를 성복제라 하며, 성복제는 종교의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복은 남자의 경우에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넥타이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여자의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버선(양말과 고무신(신발)은 옷 색깔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완장은 직계와 비속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착용하며, 두 줄은 아들과 사위, 한 줄은 기혼인 복인, 무줄은 미혼인 복인(주로 손자들)이 착용합니다.

상장은 장례를 마친 후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표시 수단으로 착용하며, 남자는 삼베로 만든 리본을 왼쪽 가슴에 착용하며, 여자의 경우 무명 천으로 만든 리본(머리핀)을 남자가 상을 당한 경우 좌측머리에, 여자가 상을 당한 경우 우측머리에 탈상 때까지 착용합니다.

셋 째 날

○ 발 인

발인은 영구가 상가(장례식장)를 떠나는 절차이며, 안치실에서 시신을 확인한 후 발인장까지 모시어 제사를 올리는 것을 발인제라고 합니다.

안치실에서 발인장까지 모실 때 일반적으로 상(머리쪽)이 먼저 나가나, 천주교의 경우 산 사람으로 간주하여 하(다리쪽)가 먼저 나갑니다.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장으로 구분하여 영결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영결식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개회사 → 분향재배 → 약력소개 → 조사 → 분향, 헌화 → 호상인사 → 폐식사 순으로 진행하고, 종교장의 경우 종교의식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발인순서는 장손, 장조카가 위패를 모시고 장조카, 큰 사위가 영정을 모시며, 다음으로 영구를 모시고, 상주와 유족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 운 구

운구는 6~8명의 운구조를 편성하여 장례식장에서 발인 할 때 또는 장지(화장장)에서 영구를 모시는 절차를 말하며, 리무진 또는 장의버스 등 영구차 탑승순서는 위패, 영정, 영구, 유족, 문상객 순으로 탑승합니다.

그리고 장지 또는 화장장에 가는 도중에 고인이 평소 살았던 곳이나,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영정사진을 모시고 머무를 수 있으며, 또한 노제(路制)를 지낼 수 있습니다.

5. 종교별 장례예법

불교식 장례

불교에서는 장례를 다비식(荼毘式)이라 하며, 다비는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을 말 합니다. 불교식 장례 순서는 임종부터 입관까지 일반 장례절차와 동일하나 영결식은 불교의 의례규범에 따라 다비식 순서대로 진행 합니다.

○ 다비식 순서

- ① 개식(開式) : 사회자가 개회사를 한다.
- ② 삼귀의례(三歸依禮) : 불(佛), 법(法), 승(勝)의 삼보(三寶)에 돌아간다 의식을 주례승이 한다.
- ③ 약력보고(略歷報告) : 고인의 친지나 친구가 고인의 약력을 간단하게 보고한다.
- ④ 착어(着語) : 고인을 위하여 주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한다.
- ⑤ 창혼(唱魂) : 극락세계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라는 의미로 스님이 고인의 혼을 부르는 의식이다.
- ⑥ 헌화(獻花) : 친지대표가 고인 영전에 꽃을 바친다.
- ⑦ 독경(讀經) : 주례승과 모든 참석자가 세속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읽는다.
- ⑧ 추도사(追悼辭) : 고인의 가까운 지인의 조사(弔辭)를 읽는다.
- ⑨ 사홍서원(四弘誓願) : 주례승이 법문을 읽는다.
 -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 중생은 끝 닿는데가 없으니 제도(濟度)하여 주기를 맹세한다.
 -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번뇌를 끊기를 원하는 맹세이다.
 -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움을 원한다는 것이다.
 -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 불도보다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⑩ 폐식(閉式) : 사회자가 영결식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위와 같은 순서로 영결식을 진행한 후에는 묘지 또는 화장장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화장 할 경우에는 시신을 분구(焚口)에 넣고 끝날 때까지 염불을 합니다.

화장이 끝난 후에는 유골을 쇠골(碎骨)하여 유골함에 넣고 납골당 또는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통상 사찰에 안치한 경우 사찰에서 49재와 백일재를 지내고, 3년 제사를 모십니다.

기독교식 장례

기독교 장례에서는 고인이 운명한 다음부터 하관(下官)까지 목사의 집례로 이루어 집니다. 고인 운명 시에는 찬송과 기도로 임종예배를 올리고, 둘째 날 염습을 마친후 입관예배를 드리며, 발인하는 날에는 영결식 예배를 올리고, 매장하는 경우 하관식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장례의 특징은 곡(哭)을 하지 않고, 제수음식을 올리지 않으며, 절도 하지 않고, 염습할 때 시신을 묶지 않습니다. 아래 영결식 예배순서와 하관식 예배순서는 기독교 종파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영결식 예배순서

- ① 개식(開式) : 사회자가 개회사를 한다.
- ② 찬송 : 주례 목사가 선택한다.
- ③ 기도 : 고인의 명복과 유족을 위로하는 기도를 한다.
- ④ 성경봉독 : 보통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낭독한다.
- ⑤ 시편낭독 : 시편 90편을 낭독한다.
- ⑥ 신약낭독 :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낭독한다.
- ⑦ 기도 : 주례 목사가 집도한다.
- ⑧ 약력소개 : 고인의 생전 약력을 목사가 소개한다.
- ⑨ 주기도문 : 장례식 참석자가 모두 다같이 한다.
- ⑩ 찬송 : 장례식 참석자가 모두 다같이 한다.
- ⑪ 헌화 : 국화꽃을 영전에 올린다.
- ⑫ 출관(出棺) : 출상을 위하여 영구를 밖으로 모신다.

○ 하관식 예배순서

- ① 개식(開式) : 주례 목사가 집도한다
- ② 기원(祈願) :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기원한다.
- ③ 찬송 : 하관식 참석자가 모두 다같이 한다.
- ④ 기도 : 주례 목사가 집도한다.
- ⑤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낭독한다.
- ⑥ 기도 :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주례 목사가 한다.
- ⑦ 신앙고백 : 하관식 참석자가 모두 다같이 한다.
- ⑧ 취토(取土) : 상주들이 봉분 전에 흙을 한 줌씩 관 위에 뿌린다.
- ⑨ 축도(祝禱) : 주례 목사가 축복기도를 한다.

천주교식 장례

천주교의 장례의식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앙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제수음식을 올리고 참배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종부성사(終傳聖事)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행하는 의식으로 가족들은 환자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 입히고 성유를 바를 곳 즉 얼굴과 눈, 코, 입, 손바닥, 발바닥 등을 씻어 준 후 상위에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십자고상과 촛대, 성수그릇, 성수 채등을 준비하고, 신부가 도착하면 상위 촛대에 불을 밝힌 후 환자만 남기고 모두 물러나 고해성사를 한다.

② 임종 전 대사

종부성사는 신부가 없이 운명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성서 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골라 읽어 드린다.

③ 운명(運命)

환자가 숨을 거둘 때에는 성촉에 불을 켜고 임종경이나 성모덕시도문, 매괴경을 읽으며, 환자가 숨을 거둘 때에는 흐느끼거나 통곡하는 것을 삼가 한다.

④ 초상(初喪)

임종 즉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하고, 손과 발은 굳기 전에 가지런하게 펴 주어야 하며, 손에는 십자고상을 잡고 있게 한다.

⑤ 위령미사

신도가 숨을 거두면 이 사실을 본당 신부에게 알리고 장례 일정과 미사시간을 신부와 상의하여 정한다.

⑦ 장례의식

장례일에는 관을 성당으로 옮겨 위령미사와 사도예절을 하고, 입관 및 출관과 하관은 성교예규에 따라 거행하며 원래는 화장을 하지 않으나 최근에는 화장도 많이 하는 추세이다.

⑧ 소기(小槨)와 대기(大槨)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는 연미사를 드리고 소기, 대기 때에도 연미사와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한다.

종교별 문상예절

○ 일반적인 문상절차

- ① 상가에 도착하면 외투를 밖에서 벗고 들어 간다.
- ② 영정 앞으로 가서 헌화하거나 분향하고, 선채로 잠시 동안 고인을 추모하여 슬픔을 표한다. 일행이 여럿일 경우는 대표자 한 사람이 분향하거나 헌화한다.
- ③ 상가의 종교에 맞춰 전통 장례일 경우 재배를 하고, 기독교나 천주교일 경우 선채로 묵념을 한 후 약간 물러서 상주 쪽으로 향해 선다.
- ④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황에 적합한 인사말을 한다.
- ⑤ 준비된 부의금을 부의함에 넣는다.
- ⑥ 대접하는 다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먹고 퇴장한다.

○ 불교식 문상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한 다음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 불을 붙이고, 향을 좌우로 흔들며 불꽃을 끈 다음 향로에 향을 꽂고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절을 두번 올린다. 절을 올린 후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독교식 문상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꽃(국화)을 가슴 부위까지 들고 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15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린 후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상주와도 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수, 경례 등으로 인사를 합니다.

○ 천주교식 문상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꽃(국화)을 가슴 부위까지 들고 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15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며 불꽃을 끄고 향로에 향을 꽂고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절을 두번 올린 후에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상주와 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악수, 경례 등으로 인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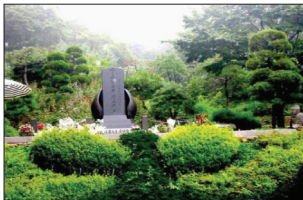
6. 화장안치방법

화장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또는 나무 밑에 묻거나(수목장), 납골당 및 납골묘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산골(유골뿌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해양장 약 40만원, 화장장 내 유택동산 무료~3만원



○ 수목장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장묘방법이나 현재까지는 수목장 시설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약 80만원 ~ 300만원



○ 시립납골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정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약 15만원 ~ 100만원



○ 사설납골당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인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별,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비용 : 수도권 기준 300만원 ~ 500만원



○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1묘당 다수(통상 4기 이상)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업체, 종교단체에서 분양하기도 합니다.
비용 : 수도권 민간업체 기준 4기 1묘당 약 800만원 이상

7. 매장안치방법

매장하는 경우 가품이나 지역풍습에 따라 관 채 매장하는 관장(棺葬)과 관을 벗기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脫棺)하는 방법이 있고, 묘지형태에 따라 단장묘(개인묘)와 합장묘로 구분되며, 묘지관리주체에 따라 가족묘지, 문중묘지(선산), 공원묘지(단체묘지)로 구분됩니다.

○ 단장묘(개인묘)

단장묘란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올려 둥근 모양의 봉분묘와 분묘 바닥이 평평한 평분묘로 할 수 있으며, 봉분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묘는 50cm 이내여야 합니다.

○ 합장묘

합장묘란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한데 묻는 묘를 뜻 하지만 대개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나중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묘지

가족묘지란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되며, 면적은 100㎡로 제한되어 있으며, 1개당 묘지면적은 단장묘의 경우 10㎡, 합장묘의 경우 15㎡이며 높이는 단장묘 기준과 동일합니다.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문중묘지(선산)

문중묘지란 과거 문중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시에 안치할 수 있는 묘지로 통상 선산이라고 합니다. 문중묘지는 1,000㎡로 제한되어 있으며 문중묘지 내에는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1개의 묘지면적과 높이는 가족묘지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 공원묘지(단체묘지)

공원묘지란 면적이 100,000㎡ 이상의 단체묘지로 묘지와 도로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이 혼합된 묘지를 말합니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사설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 사설묘지 설치신고

- ▷ 신고기한 : 단장묘, 합장묘의 경우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 ▷ 설치신고 : 묘지설치지역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사무소)
- ▷ 구비서류 :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소유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8. 평균 장례비용

평균 장례비용 지출내역

구 분	장례비목	세부내용	비 용
1일차	1.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진단서 7~10매 발행	5~ 30만원
	2. 장례식장 이송	- 엠블런스 동일 행정구역 기준	10 ~15만원
	3. 안치실 사용료	-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 사용료	10~ 40만원
	4. 수시비	-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리하는 비용	10~ 40만원
	5. 빈소사용료	-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100~300만원
	6. 빈소용품	- 부의록, 위패, 훈백, 양초, 향 등	10~ 15만원
	7. 영정사진	- 영정사진 확대, 틀, 리본 등	7~ 30만원
	8. 제단장식비	- 제단 생화장식, 영정사진 생화 장식	40~100만원
	9. 제수음식비	- 제단 제수음식 및 성복제, 상식(2회)	40~80만원
	10. 조문음식비	- 조문객 접대음식 (200명기준)	200~300만원
	11. 식음료/주류	- 조문객 접대 식음료 및 주류 (200명 기준)	80~120만원
	12. 음식도우미	- 조문객 접대 도우미 용역비 (1일3명, 2일기준)	40~60만원
	13. 접객용품	- 그릇, 접시, 컵, 수저, 위생용품 등	15~20만원
	14. 남자상복	- 검정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10벌기준)	30~40만원
	15. 여자상복	- 한복 또는 개량한복 (10벌기준)	10~20만원
2일차	16. 입관실 사용료	- 염습하는 시설사용료	20~40만원
	17. 염습비	- 염습하는 장례지도사 용역비 (2명)	20~40만원
	18. 수의	- 염습시 입히는 옷 (대마 100%, 기계직 기준)	60~120만원
	19. 관	- 화장, 매장 탈관시 기준 (1치기준)	20~30만원
	20. 관보	- 관을 덮는 천	5~15만원
	21. 횡대	- 관을 묻은 뒤 위에 덮는 나무	10~35만원
	22. 입관용품	- 명정, 알콜, 탈지면, 염지, 보공, 결관보, 베게, 습신, 칠성판, 수세보, 다라니경, 운아 등	20~30만원
3일차	23. 장의버스	-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40~ 50만원
	24. 리무진	-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50~ 60만원
	25. 발인 제수음식비	- 발인제 제수음식비	15~30만원
	26. 화장장 사용료	- 고인 거주지 화장장 사용기준	6~100만원
	27. 납골안치비용	- 사설납골당 기준 (수도권 기준)	300~500만원
	28. 매장작업비용	- 선산 기준 (잔디, 봉분, 인력 3명 기준)	120~150만원
	29. 묘지안치비용	- 공원묘지 기준 (약 3평 기준)	800~1,200만원
합 계		(화장 후 납골당 안치 기준)	최소 1,173만원 최대 2,260만원

산출기준 : ① 2010년 수도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 사설납골당 안치기준입니다.

②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은 48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③ 위 산출금액은 산출시점과 지역별 장례식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 장례비용 절감방법

앞 장의 평균 장례비용에서 나타나 있듯이 장례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남으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 및 안치장소의 장례비용을 확인거나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안치실, 입관실, 빈소사용료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규모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사용평수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2배~3배 이상 가격차이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빈소규모, 부대시설 등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례식장의 음식비

장례식장의 음식은 일반식당과 달리 밥, 국, 반찬, 과일, 안주 등 각각 주문하여야 하고, 음식비도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음식비는 일반식당보다 비싸고, 장례식장 별로 많은 가격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음식종류와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크게 제단 꽃, 영정 등 빈소용품과 수의, 관 등 입관용품, 장의버스, 리무진 등 차량과 상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장례용품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례식장의 인력서비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접대를 위하여 음식도우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장례지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진행, 발인, 화장, 안치 등 전반적인 진행은 상주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또는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한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와 함께 전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임종시점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화장, 봉안당, 묘지 등 장묘시설

- ① 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거주자가 벽제화장장 이용시 9만원이나 성남화장장 이용시는 100만원
- ② 봉안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인 경우 시립봉안당에 안치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천거주자가 시립봉안당 이용시 15만원이나 사설봉안당 안치시 약 300만원
- ③ 사설봉안당 및 공원묘지 안치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해당 봉안당 및 묘지를 방문하여 교통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과 함께 안치비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